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 2008년도 주요범죄 암수추정

황 지 태*

국 | 문 | 요 | 약

범죄피해조사의 기본 목적 중 하나가 범죄암수추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내에서 실시된 여러 차례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종합적인 범죄암수추정이 시도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숨은 범죄의 양을 추정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도 어려운 작업인데다가 이들 조사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현실적으로도 난관에 부딪혀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가 과거의 조사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크게 개선한 것을 계기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을 해보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도 주요범죄의 암수추정을 시도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 간 축적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범죄암수추정의 난점을 회피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을 토대로 범죄암수를 추정한 다음, 이를 검증하는 장치를 개발해보고자 노력하였다.

범죄암수추정 결과, 2008년도의 침입절도범죄는 실제 사건의 8.6%, 침입강도는 9.7%, 대인절도는 1.3%, 대인강도는 2.4%, 성폭력범죄는 12.5%, 심각한상해범죄는 28.0%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 여러 오류의 가능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본고에서 시도한 범죄암수추정 작업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되어왔던 그 어떤 피해조사 자료보다도 양호한 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범죄암수추정의 방법이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아냈다. 특히, 범죄암수를 추정할 때에는 공식통계상의 각 범죄에 대한 정의와 분류방식 및 각 범죄가 포괄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각 범죄유형별로 범죄암수율이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유형 내에서도 사건 내용이 심각할수록 범죄암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대체로 확인하였다. 동시에 개별 범죄의 독특한 속성들로 인해 좀 더 세분화된 판단을 해야 범죄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분화에 따라 범죄암수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범죄암수추정 역시 종종 세분화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조사 표본의 규모와 공식범죄통계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세분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 주제어 : 범죄암수, 숨은범죄, 범죄암수추정, 공식통계, 공식범죄통계,
범죄피해조사

I. 서 론

범죄학과 범죄사회학에서 피해·피해자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은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Sparks et al., 1977). 달리 말하자면, 공식범죄통계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처리된 가해자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인지·처리되지 않은 ‘숨은 범죄(hidden crime)’는 공식통계에서 제외되는 현상¹⁾을 인식(Grabosky, 1989)하게 되면서 피해·피해자 개념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조사(victim survey)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의 원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정확한 범죄율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준호·심영희·조정희, 1991).

그러나 피해조사의 그와 같은 원래 주요한 목적은 이후 피해조사가 활성화된 이후에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해왔지 않나 싶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초창기 실험적인 피해조사에서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직접적으로 ‘숨은 범죄’를 파악해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심영희, 1990; 심영희 외, 1990), 그 뒤로 좀 더 정교한 연구방법을 사용해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범죄피해조

1)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어떤 범죄들은 발각되지 않는다. 2. 어떤 범죄들은 발각되어도 경찰에 신고 되지 않는다. 3. 어떤 범죄들은 경찰에 신고 되어도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는다. 4. 어떤 범죄들은 경찰에 의해 접수되어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5. 어떤 범죄들은 주(나라)마다 법적인 정의(legal definition)가 다르다. 6. 범죄에 대한 현장 보고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 과정의 오류는 다반사이다(Sutherland, Cressey & Luckenbill, 1992 [Sutherland & Cressey, 1947]). 공식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문헌을 참조(Savitz, 1982; O'Brien, 1985; Hagan, 1988; Grabosky, 1989; Adler, Mueller & Laufer, 1991; 김준호·이동원, 1991).

사들(심영희 · 김준호 · 최인섭 · 조정희 · 박정선, 1992; 최인섭 · 박순진, 1995; 최인섭 · 기광도, 1998; 박순진 · 최영신, 1999; 장준오, 2000;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²⁾. 왜 그랬을까? 피해조사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가 범죄암수추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숨은 범죄의 양을 추정해내는 것이 설령 피해조사의 완벽성을 전제한다고 해도 어려운 작업인데다가, 이들 피해조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도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피해조사와 공식통계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 때문인지, 피해조사는 범죄암수추정에 활용되기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Karmen, 1996)하거나 범죄피해발생이론을 구성 · 검증(Cohen & Felson, 1979; 이성식, 1998)하는데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한다.

피해조사가 갖는 기본적 문제들과 조사상의 오류들, 피해율을 공식범죄율과 비교하는 작업에 수반되는 여러 난점들이 범죄암수추정이라는 피해조사의 본래 목적을 일정 정도 희석시켜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주요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이하 김은경 외, 2009로 표기)는 과거 조사들에서 나타났던 제문제들을 크게 개선한 것이어서, 좀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을 해보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피해조사 경험축적과정에서 더 나은 범죄암수추정방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성과들이 쌓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범죄암수추정을 시도해 볼만 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2) 간접적 혹은 국지적 차원에서는 그런 시도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우선, 정확한 암수추정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간 실시된 피해조사 결과만으로도 공식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암수가 꽤 많다는 정도까지는 거의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 한편, 때때로 공식통계의 범죄발생률 추세와 피해조사의 피해율 추세를 서로 비교하는 작업들이 수행되기도 하였다(박순진, 2003; 최인섭 · 황지태, 2004, 황지태, 2009a, 황지태, 2009b). 하지만, 그 경우 공식통계와 피해조사결과와의 추세비교였고, 직접적인 범죄암수추정 시도는 아니었다. 국지적 차원에서는, 오로지 성범죄에 국한하여 범죄암수추정을 시도한 몇몇 연구들이 있었다(최인섭 · 김성언, 1998; 김승권 외, 2008).

II. 범죄피해조사와 공식범죄통계 간 비교의 난점과 선행 연구 사례

범죄피해조사자료를 공식범죄통계자료와 비교하여 범죄암수를 추정하는 작업이 좀 더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두 자료를 비교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되도록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어느 정도 피해 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축적(Van Dijk & Steinmetz, 1980; Skogan, 1981; Sparks, 1981; O'Brien, 1985; Garafalo, 1990; Karmen, 1996; Garafalo & Hindelang, 1997; 심영희, 1990; 심영희 · 조정희, 1990; 심영희 외, 1990; 박순진, 1994; 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박철현, 2002; 이순래, 2002)은 두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발견하는 데 공헌해 왔다. 이에 먼저 그 구체적 문제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해보고, 범죄암수추정을 시도했던 국내 선행 연구들(심영희, 1990; 최인섭 · 김성언, 1998; 김승권 외, 2008)의 의의와 한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범죄암수추정의 난점과 난점 우회

피해조사는 ‘피해자 없는 범죄’³⁾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더라도 피해가 넓게 분산되어 있거나 간접적이어서 가시적인 피해가 개인적으로 감지되기 어려운 범죄들⁴⁾ 역시 파악해내기가 어렵다는 기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조사를 통한 암수추정작업에서는 처음부터 그 대상 범죄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고 오로지 비교가능한 범죄들의 암수만을 추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다른 여러 난관들이 존재한다.

3)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란 도박이나 마약, 매매춘, 낙태, 포르노 영업 등 피해자가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유형이다(이순래, 2002 : 41).

4) 가령 환경범죄, 권력형 부패범죄 또는 사기성 광고나 가격 담합과 같은 조직범죄들

1) 범죄율과 범죄피해율 사이의 괴리 문제

피해조사자료와 공식통계자료를 비교할 때, 보통 범죄율과 피해율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질 경우,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이 두 가지는 한 사람의 가해자가 저지른 한 가지 범죄에 의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김준호 · 심영희 · 조정희, 1991). 이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문제는 가령 ‘은행강도사건’의 예를 들어 지적해 볼 수 있다. 은행직원과 고객을 합친 수가 10명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한 사건만 고려할 경우, 공식통계는 1건이 되지만 피해조사의 피해자는 10명까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범죄암수추정이 심각한 오류로 귀결될 것이다⁵⁾.

이런 문제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특정 범죄유형들(가령, 침입강 · 절도)의 경우, 피해조사에서 피해의 단위를 ‘피해자 단위’로 집계하지 않고 ‘피해장소 단위’로 집계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회피될 수 있다. 그 경우 발생 사건수와 피해 사건수가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보통 피해조사에서는 ‘가구범죄’와 ‘대인범죄’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1991년에 실시된 피해조사 이래로 ‘가구범죄’와 ‘대인범죄’를 구별하여 측정해 오기는 하였으나, 실제 표집과정에서는 ‘가구범죄율’ 계산의 기초가 되는 표집방법이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아왔다⁶⁾(박순진, 2002). 하지만, 본고에서 기본 분석자료로 삼고 있는 가장 최근의 피해조사(김은경 외, 2009)에서는 과거 조사들과 같은 가구관련 표집문제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주거침입강절도 같은 가구범죄에 대한 범죄암수추정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해질 수 있다고 사료 된다⁷⁾.

5) 물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사례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피해자수는 전체 사건수에 근접하는 수준이 된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범죄율과 피해율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김준호 · 심영희 · 조정희, 1991)은 그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입강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암수추정을 할 때엔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른 범죄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6) 지역별로 볼 때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와 가구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피해조사연구들(1993-2005)에서는 사실상 인구분포만을 기준으로 표집을 수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박순진, 2002 : 26-27). 그럴 경우, 가구범죄피해율은 과다 또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7) 그러나 주거침입강절도 이외의 기타 침입강절도, 가령 앞서 제시했던 은행침입강도 같은 경우엔

2)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 문제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불일치’ 문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왔던 피해조사(1991년-2005년)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종종 제기되었던 문제다(기광도, 2002; 박철현, 2002; 이순래, 2002). 가장 단적인 예로 제시되었던 것이 피해조사의 ‘대인강도’다. 2005년도까지의 피해조사에서의 대인강도 측정문항⁸⁾은 형법상의 강도뿐만 아니라 공갈범죄에도 포함될 소지가 없지 않아 일부 학자들은 대인강도 범주에 사실상 공갈과 강도가 모두 포함되었을 것이란 추정을 하기도 하였다(기광도, 2002 : 14). 그 같은 추정이 옳다면, 그동안의 피해조사에서 측정된 대인강도 피해율은 과대산정된 셈이다. 이런 문제는 설문내용 구성전략의 개선에 따라 어느 정도 감소될 수도 있다. 가장 최근의 피해조사(김은경 외, 2009)에서는 과거 처럼 단일 질문으로 피해경험을 측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조합하여 특정 범죄피해경험 빈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응답자가 경험한 피해가 특정 범죄의 법률적 구성요건에 더 근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문제는 피해조사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피해조사상의 피해를 법률적 정의 속에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암수추정과정에서 그것을 공식범죄통계상⁹⁾의 특정범죄의 정의와 범위에 제대로 맞대응시키지

여전히 범죄율과 피해율 사이의 간극을 메울 방법이 극히 난망하다. 가구단위로 표집을 수행하고 가구단위로 피해율을 계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각각의 은행, 상점, 공장, 사무실 등의 단위로 표집하는 것은 어렵다.

- 8) “작년에 귀하는 집 밖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거나 빼앗길 뻔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문항(최인섭 · 박순진, 1995; 최인섭 · 기광도, 1998; 박순진 · 최영신, 1999; 장준오, 2000;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 9) 공식통계의 집계규정 및 관행 역시 범죄암수추정에 있어 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식통계 집계규정상, 경합사건은 범조경합 ·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을 불문하고 중한 범죄 1건만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은경 · 박정선 · 정병하 · 탁종연 · 황정인, 2009 : 23). 경합사건 중에는 서로 다른 내용의 범죄가 2개 이상, 그리고 서로 다른 내용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2명 이상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경합이 되면 나머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만 남게 된다. 이 경우, 공식통계상 집계된 범죄는 1건이지만, 피해조사상 나타나는 피해자 혹은 피해건수는 2건 이상이 될 수 있다. 동일 가해자의 반복범죄의 경우에도 가장 중한 1건만 정식으로 집계되는 것(앞의 문헌 같은 쪽), 최종 범죄의 수단이 되는 ‘도구적 범죄’의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누락되고 있다(앞의 문헌 : 25)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요컨대 현재 기준에 따르면 특정한 범죄들은 공식통계에서 체계적으로 왜곡 · 축소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앞의 문헌 같은 쪽). 이 점을 감안한

못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특히 어느 한 특정 범죄유형 속에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이나 기타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때에 심각해질 수 있다. 피해조사상 특정범죄의 피해주체는 개인 혹은 기껏해야 가구이기 때문이다. 공식통계상 해당 범죄사건들의 피해주체가 개인이 아닌 경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그 범죄유형에 대한 암수는 과소추정될 것이다. 이 문제는 공식통계상의 범죄분류방식을 명확히 파악하고 때때로 그것을 하위범죄유형으로 재분류하여 피해조사상의 분류범주와 일치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3) 기타 범죄피해조사상의 오류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피해조사방법상의 제문제들이 범죄암수추정의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자면, ① 응답자의 피해경험 회상오류의 문제, ② 조사표본수의 문제, ③ 부적절한 표집방법의 문제 등을 꼽아볼 수 있다.

피해경험 회상오류는 응답자가 피해경험을 망각(forgetting)¹⁰⁾하거나 부정확하게 잘못 기억(시기회상오차, telescoping¹¹⁾)하는 오류를 뜻하는 것(Garafalo & Hindelang, 1997; 이순래, 2002)으로 이 오류에 따라서도 피해율 산출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최근의 피해조사(김은경 외, 2009)에서는 피해경험 회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부대적 질문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 회상과 관련된 오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적어도 기존의 조사들의 경우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는 한다.

다만, 설령 피해조사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공식통계 집계규정과 관행들만으로도 범죄암수추정은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난점은 결국 장기적으로 공식통계 집계규정과 관행을 개선·합리화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당장의 범죄암수추정 시도를 함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요인이다.

- 10) 망각의 경우 보통 과거 1년 단위로 범죄피해경험을 물었을 때, 비교적 최근에 가까운 경험은 잘 기억하지만 과거로 갈수록 잘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 11) 시기회상오차(불안정한 회상)의 경우는 피해경험이 기억은 나는데, 그 정확한 시점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하는 것이다. 특히 1년 전 경험을 2년 전 경험으로 잘못 기억하거나 2년 전 경험을 1년 전 경험으로 잘못 기억할 경우, 보통 1년 회상 단위로 질문이 주어지는 피해조사의 피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조사표본수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표집방법은 정교하고 정확할수록 좋을 것이다. 과거 국내 피해조사에서의 평균적인 표본수(대략 2,000명 내외)가 일반적인 의식조사 연구에서의 표본수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박순진, 2002 : 27-28), 피해경험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표본수였던 것이 분명하다¹²⁾(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표집방법의 경우,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그리고 골고루 반영하지 못할 경우 피해율은 과대 혹은 과소 산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의 피해조사(김은경 외, 2009)에서는 이전 조사들에 비해 표본수도 대폭 증가하였고, 표집방법도 이전보다 상당히 정교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역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2. 범죄암수추정 선행 연구의 한계와 의의

우리나라에서 피해조사자료 혹은 피해조사 성격의 자료를 가지고 주요범죄의 암수를 종합적으로 추정해본 논문은 단 한 편(심영희, 1990)밖에 없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는, 여러 범죄암수를 동시에 추정한 논문이 발표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 암수만을 따로 추정했던 보고서 두 편이 존재할 뿐이다(최인섭 · 김성언, 1998; 김승권 외, 2008).

〈참고표 1〉 선행연구에서의 범죄암수추정 :
1988년 공식통계와 피해조사결과에 나타난 범죄율 비교

범죄유형	공식통계(1988년)		조사결과*		숨은범죄 대 공식범죄	추산 신고율(%)
	발생건수	인구10만 명 당 발생건수	응답자 2,264명 중 범죄피해자수	인구10만 명 당 피해자수		
절 도	93,094	218.6	354	15,636.0	71.5	1.4
강 도	3,446	8.1	49	2,164.3	267.2	0.4
강 간	4,658	10.9	22	485.91)	44.6	2.2
강도강간	428	1.0	9	198.82)	198.8	0.5

12) 범죄피해경험은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볼 때 회귀 사례에 속하고, 그로 인해 웬만큼 표본수가 크지 않고서는 그 경험들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 1989년 9월에 실시된 조사로, 1989년도의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한 것임(심영희 외, 1990).

1) $22 \div (2,264 \times 2) \times 100,000$. 2) $9 \div (2,264 \times 2) \times 100,000$.

※ 출처 : 심영희, 1990,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 1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먼저 <참고표 1>은 1988년도 주요 범죄암수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심영희, 1990 : 160)¹³⁾. 표를 보면, 한 눈에 봐도 상당한 범죄암수가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오로지 표만 자세히 보아도 이 표에 나타난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절도와 강도의 암수율이 상식과 배치된다. 상식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경우에도, 절도의 암수가 강도의 암수보다 적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추산신고율’¹⁴⁾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신고율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경향, 즉 상대적으로 심각한 범죄는 많이 신고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덜 신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표에서는 절도의 추산신고율이 강도의 추산신고율의 3배를 넘어선다. 조사상의 강간 발생건수와 강도강간 발생건수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¹⁵⁾이고, 강도와 강도강간을 대비해도 현실적 타당성이 떨어짐은 물론이다¹⁶⁾. 위 표에 나타난 문제들은 주로 조사방법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정된다. 이는 설문지에서 피해경험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불안정성¹⁷⁾, 침입성 가구범죄와 대인범죄의 미구별, 표본추출(sampling)의 문제¹⁸⁾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13) 참고로, 이 표의 토대가 되는 조사는 1989년 9월에 실시된 것이며, 조사대상 모집단은 서울지역 거주 성인여성이며, 총표본수는 2,290명, 최종 분석 표본수는 2,264명이다(앞의 문헌 : 151-152).

14)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순수한 의미의 신고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고된 사건이 모두 경찰에 접수되어 공식통계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접수에서 누락된 사건의 수가 적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고의 뒷부분에서는 ‘추산신고율’이란 개념 대신, ‘추정범죄처리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15) 강도강간이 9건이면, 강도강간을 제외한 순수한 강간은 13건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22건의 강간 중 9건이 강도강간일 수 있는 현실적 개연성은 희박하다.

16) 전체 강도사건(49건) 중에 5분의 1이 강도강간 사건(9건)이라는 점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

17) 당시 설문에서는 특정 범죄의 구체적 행위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이 아니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범죄 피해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라고 질문 한 뒤 간단하게 “절도 건, 강도강간 건”이라는 형식으로 측정(심영희 외, 1990 : 280)한 것이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앞서 지적한 피해조사의 문제점 중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 혹은 불일치’의 문제를 가장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18) 당시 표본이 얼마나 편중된 표본인지는 이 표본의 연령분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19세 여대생을

국내 범죄사회학계의 초창기 연구로서 현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수행된 위 연구결과는 그 오류를 통해 범죄암수추정이 여러 변수에 따라 크게 왜곡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피해경험의 측정방식과 표집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이 연구는 뒤에 살펴볼 두 연구에 비해 매우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기도 한데, 그것은 범죄암수를 오로지 한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만 추정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대상으로 동시 추정하였다는 점과 추산신고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이 연구결과가 추정된 결과를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초보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오로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암수를 추정했던 보고서들(최인섭 · 김성언, 1998; 김승권 외, 2008)은 위 연구보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정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체계를 갖추지 않아 추정된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996년도의 서울시민들의 성폭력피해 실태를 조사하였던 연구(최인섭 · 김성언, 1998)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그리고 ‘심한 추행’ 피해의 합계를 공식통계상의 ‘강간범주¹⁹⁾’와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여 성폭력범죄 암수추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숨은 범죄를 포함한 추정된 전체성범죄가 공식통계상의 ‘강간범주’보다 무려 222배(앞의 문헌 : 113)나 더 크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편,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2006년도 성폭력피해경험(‘강간 · 강간미수’, ‘심한추행’, ‘가벼운추행’ 포함)을 측정한 실태조사(김승권 외, 2008)에서는 168.4배(앞의 문헌 : 251)가 더 많다는 계산이 산출된 바 있다. 이 두 조사에서 추정된 성폭력범죄암수는 뒤에서 살펴볼게 될 본고에서의 성폭력범죄 추정암수보다 월등히 큰 수치이다. 그와 같은 극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분

포함한 20대와 30대 여성의 비율의 합계가 86%에 달하였다(앞의 문헌 : 154의 표 참조). 이와 같은 표본의 극히 편중된 연령분포를 가지고 조사피해율을 공식통계와 비교하면, 피해율이 확실하게 과대산정될 수밖에 없다. 보통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강간범죄의 경우엔 다른 범죄보다도 특별히 ‘젊은’ 여성(20-30대)의 피해율이 높기 때문에 위 표에 나타난 강간피해율과 강도강간피해율은 더 과대산정된 값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윤락 여성의 비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초 표본 2,290명 중에 158명(7%)이 윤락여성이었다. 이는 강간범죄와 강도강간피해율의 극과대 산출 가능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락여성의 강간 및 강도강간범죄피해 가능성(혹은 그 피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일반여성보다 월등히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 강간과 강제추행 등 여러 성폭력의 합산치이다.

석이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우선적으로는 ‘표집을 비롯한 조사방법의 차이²⁰⁾’,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정의 넓고 좁음 혹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의 차이²¹⁾’, ‘시간경과에 따른 성폭력범죄압수의 감소 가능성²²⁾’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이유, 즉 측정방법 및 성폭력범죄피해의 규정범위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추정결과와 비교해 이 두 연구가 갖는 의의는 범죄피해에 대한 측정 방법, 특히 범죄피해 정의와 범위의 문제가 범죄압수 추정결과를 얼마나 다르게 산출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 20) 표집방법의 경우, 1996년도 조사와 2006년도 조사 모두 눈에 띄 정도로 두드러진 표집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996년도 조사는 비록 서울지역 거주 여성(1,500명)에 표본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조사대상자의 선정을 인구비례확률표집에 의거하여 서울시 25개구별, 연령별 모집단의 인구비례에 맞춰 결정하였다는 점(최인섭 · 김성연, 1998 : 69)에서 심각한 표집오류를 찾아내기는 힘들다. 2006년도 조사는 표본수가 남녀 13,608명(실제 분석 13,588명)으로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수보다도 큰 대규모 표본이었다. 단, 이 경우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상의 분포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며(김승권 외, 2008 : 236-237), 특히 여성 장애인 인구(앞의 문헌 : 244)가 모집단보다 과대표집된 감이 있다. 하지만, 표집상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이들 연구의 성폭력범죄 추정압수가 본고와 극심하게 차이가 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지는 않다.
- 21) 범죄압수추정에 있어 피해조사상 범죄피해의 정의(definition) 및 측정(measurement)방식에 따라 범죄압수는 매우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의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피해율은 크게 올라가고 그에 따라 추정된 범죄압수율이 치솟게 되어 있는 반면, 범죄피해의 범위를 좁게 잡을수록 피해율은 크게 내려가고 추정된 범죄압수율이 대폭 감소하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2008년도 피해조사는 범죄의 정의가 법률상의 정의에 근접할 정도로 엄격하고 측정방식도 매우 까다롭다. 특히 기존의 피해조사들에서 오로지 단 하나의 문항으로 범죄피해를 측정했던 것에 비해, 2008년 피해조사에서는 여러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조합하여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해당 피해여부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 요인 하나만으로도 기존 조사들에 비해 피해율이 적게 산정되고 그에 따라 범죄압수도 기존 연구에 비해 크게 작아질 수 있다.
- 22) 이 가능성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왔던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피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범죄압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는 사실(황지태, 2009a, 2009b)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연구의 자료와 비교분석의 방법

1. 연구의 자료 및 비교분석(범죄암수추정)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이 피해조사상의 피해율과 공식통계상의 범죄율 비교를 통해 범죄 암수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당연히 피해조사자료와 공식통계자료 두 가지이다. 이 중 피해조사자료는 가장 최근의 것인 2008년 피해조사자료(김은경 외, 2009)이고, 공식자료는 동년도 범죄통계가 수록되어 있는 『2009 범죄분석』(대검찰청, 2009a)이다. 이 중 피해조사자료는 앞서 언급하였던 문제점들, 특히 과거의 피해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적어도 몇몇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²³⁾하였다고 할만하다.

본고에서 피해조사자료와 공식통계자료를 비교하는 기본방법과 원칙의 핵심은 가급적 “동일유형의 범죄가 두 자료 사이에서 서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⁴⁾. 이

23)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 중의 하나는 표본수의 커다란 증가이다. 이 조사의 표본수는 4,710가구(총성공가구수), 10,671명(총성공개인수)이다. 평균적으로 2,000명 수준이었던 과거 표본사례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표본의 증가에 의해 회귀발생 범죄유형(가령, 전형적인 강간범죄)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를 추정치의 불안정성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만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선은 표집단위 문제의 해결이다. 과거 피해조사(1991년~2005년)에서는 관찰단위가 서로 다른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를 형식적으로 구별하기는 하였으나, 가구범죄까지도 인구비례로 표집하여 가구범죄피해율의 왜곡 가능성이 컸었다(박순진, 2002 : 26). 이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관찰단위를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의 두 차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표집방법 역시 두 가지 가구단위 표본과 인구단위 표본으로 계열화하여 접근하였다(김은경 외, 2009 : 74). 이를 통해 가구범죄피해율의 왜곡가능성은 적어도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피해경험 포착방법 역시 대대적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여러 구체적 행위나 피해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별하여 특정유형의 피해를 최종판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 방법의 최대장점 중 하나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불일치’문제를 상당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범죄의 법률적 구성요건에 맞는 행위요소들만 골라 조합하여 법률적 정의에 최대한 근접하는 피해경험만을 따로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본고에서 그외 논의는 생략한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 문헌 pp74-150 참조.

24) 이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피해조사에서 측정된 ‘주거침입절도’는 공식통계에 나타난 절도 중에서 오로지 ‘주거침입절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들만 뽑아서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유형을 합쳐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범죄유형을 분할하여 비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조사에서 알게 모르게 누락된 하위유형의 범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

비교의 원칙으로 인해, 피해조사상의 범죄유형 및 특정 범죄유형의 범위를 재조정 하기도 할 것이지만, 공식통계치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피해조사상의 해당 범죄의 범주와 되도록 유사해질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도 할 것이다²⁵⁾. 또한 이 원칙에 따라, 공식통계와 피해조사자료 사이의 비교가 특별히 어렵게 되는 있는 범죄유형들의 경우엔 비교 대상에서 제외²⁶⁾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주거침입강도’, ‘대인강도’,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성폭력’, ‘신체적 피해가 분명한 상해범죄’의 총 여섯 가지 범주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공식통계상의 범죄율과 피해조사상의 피해율을 비교할 때에는 비교의 기본 단위가 같아지도록 하였다²⁷⁾.

령, 조사상의 ‘주거침입절도’와 ‘대인절도’를 합칠 경우, 그것이 곧바로 공식통계상의 전체 절도와 맞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 25)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공식통계에서 특정 범죄유형들이 분류되어 있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각 범죄유형별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 26) 2008년 피해조사보고서에 측정되어 제시된 범죄, 즉 주거침입강도, 단순주거침입, 대인절도, 대인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사기, 보이스피싱, 기타의 범죄유형들 중에서 협박·괴롭힘, 사기, 보이스피싱, 기타는 제외하고, 폭행·상해의 경우엔 ‘일반 폭행’은 제외하고 ‘신체적 피해가 분명한 상해범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단순주거침입’의 경우에도, 공식통계상의 적절한 비교 대상이 없는 탓에 제외하였다. ‘광의의 폭행’, ‘협박·괴롭힘’은 일반인들 사이에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범위가 워낙 제각각이기 때문에 피해조사에서의 ‘일반(비교적 가벼운) 폭행’과 ‘협박·괴롭힘’은 공식통계와의 비교 자체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는 ‘사기범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기의 경우, 특별할 정도로 법률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가 크다. 비록 2008년 피해조사에서 사기범죄 측정에 큰 공을 들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에서 측정된 사기는 공식통계상의 사기의 범주와 크게 불일치할 개연성(가령 기업부도의 경우)이 여전히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사기 역시 비교에서 일단 제외할 것이다. 물론 차후에라도 피해조사상 사기 개념이 공식통계상 사기범죄와 면밀하게 대응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그 비교를 엄밀한 방법으로 수행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당장이라도 사기범죄의 범죄암수를 간단하게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비교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논리적으로 부적합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는 게 문제이다. 2008년 피해조사에서의 사기피해율은 인구 10만 명 당 2314.7건(10,671명 중 247건)으로 계산된다. 같은 해 공식통계에서의 사기는 205,140건이고 이는 인구 10만 명 당 422건으로 계산된다. 이럴 경우, 사기범죄의 ‘추정범죄처리율(발각되는 비율)’은 18.2%가 된다. 여기까지는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피해조사상 사기범죄의 신고율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정치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2008년 피해조사에서 피해자신고율은 8.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식통계상 사기에는 피해조사에서 측정하지 못한 사기의 유형이 상당한 정도로 더 존재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
- 27) 먼저 주거침입강도나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경우엔 철저하게 ‘가구 단위’로 범죄율 혹은 피해율을 계산하였다. 피해조사에서는 표본의 전체가구수를 분모로 사용하였고, 공식통계의 경우엔 2008년 추계가구수인 16,673,162가구를 분모로 사용하여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대인절도, 대인강도, 신체적 피해가 분명한 상해범죄의 경우엔 ‘인구단위’로 범죄율 혹은 피해율을 계산하였다.

참고로, 2008년 피해조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고에서 여러 가지 이유²⁸⁾로 인해 피해율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표본수 중 피해사례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단, 피해조사상의 피해자신고율을 계산할 때에는 가중치가 부여된 신고율을 주로 이용하였다²⁹⁾. 덧붙여, 범죄건수와 피해인원을 비교할 때에는 각각에 대응하는 기준에 맞게 서로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³⁰⁾. 끝으로, 범죄건수는 ‘원보고서’(김은경 외, 2009 : 154) 내에 있는 ‘총피해건수’가 아니라³¹⁾ ‘사건보고수’임을 미

피해조사에서는 표본의 전체인원수를 분모로 사용하였고, 공식통계의 경우엔 2008년도 연앙추계 인구인 48,606,787명을 분모로 사용하여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성폭력’의 경우엔, 대인절도나 대인강도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기도 하였지만, 주된 비교는 여성인구와 여성피해자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즉 본지는 오로지 여성 성폭력피해자 혹은 피해건수만을 이용하고, 분모는 여성인구를 이용하는 비교방법이다. 이 경우, 피해조사에서는 표본의 여성인원수를 분모로 사용하였고, 공식통계의 경우엔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 중 여성인구인 24,190,904명을 분모로 사용하여 여성대상 성폭력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 28) 첫째, 본고에서는 공식통계의 범죄율을 계산할 때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를 사용하였는데, 2008년도 피해조사의 경우 2005년도 전체 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참고로, 양자 사이에는 꽤 차이가 있다. 둘째, 원보고서(김은경 외, 2009)에 제시된 피해율 가중치값은 특히 피해건수에 있어 조금 잘못된 분모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계산이 다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중치값을 옳게 재계산할 수 있으나, 과정이 복잡해서 편의상 표본에서의 피해율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셋째, 가중치를 부여한 피해율과 그렇지 않은 피해율값의 차이가 별로 그다지 크지 않다. 넷째, 피해유형에 따라 가중치피해율이 표본피해율보다 약간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가급적 피해조사의 최소피해율을 비교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접수된 사건의 경우에도 공식통계가 약간 축소되어 있는 탓에 최소피해율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유이다.
- 29) 범죄피해율과는 달리 신고율의 경우, 가중치값과 표본비율값의 차이가 꽤 크다. 이 중 가중치값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더 가까운 것이라 판단한다. 지역분포, 연령·성별분포 등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30) 즉, 피해조사의 범죄건수 기준 피해율은 공식통계의 범죄건수 기준 발생율과 비교하고, 피해조사의 피해자수 기준 피해율은 공식통계의 피해자수 기준 발생율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단, 이럴 경우, 공식통계에서 부득이하게 복잡한 재계산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신고접수율 추정이나 종합적인 비교를 할 때에는 두 개의 피해율 혹은 범죄율 중 그 계산 과정에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을 것이라 판단되는 수치를 주로 이용하였다.
- 31) 그렇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이 계산치들은 틀린 계산치들이다. 먼저 이 계산치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범죄를 판별하기 위해 주어지는 질문보다 먼저 나온다는 게 문제다. 가령, 주거침입절도가 판별되기 전에 이 수치가 먼저 나온다. 따라서 주거침입절도의 총피해건수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며, 거기에 다른 종류의 절도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둘째, 실령 ‘총피해건수’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식통계와 비교할 때에는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총피해건수’ 측정의 본래 목적은 일종의 ‘반복범죄’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그와 같은 ‘반복범죄’들은 현재의 관행상 공식통계에서 어차피

리 밝혀둔다.

2. 추정범죄암수의 타당성(현실 적합성) 검토의 방법

본고에서는 범죄암수추정결과와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작업을 덧붙였다.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방법은 피해조사에서 파악된 피해자신고율을 통해 범죄암수와 신고율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을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범죄가 오로지 피해자신고에 의해서만 인지되고, 피해자신고가 모두 공식범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엔, 피해조사 피해율에 신고율을 곱하면 해당 범죄의 공식통계상 범죄율과 유사해질 것이다. 또한 앞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검산방법은 피해조사를 통한 범죄암수추정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가정’일 뿐이다. 왜냐하면, 많은 범죄들은 피해자신고에 의거하지 않고도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제3자 신고, 경찰의 직접인지 등) 피해자신고에 의한 적발비율이 각 범죄유형에 따라 크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고된 범죄라 하더라도, 모두 공식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는 되었으나 접수는 되지 않는 사건은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존재하며, 그 비율은 각 범죄유형별로 모두 다르다. 참고로, 영국범죄피해조사에서의 신고율과 신고기록율에 관한 <참고표 2>(Sanderson, 1994)와 우리나라 경찰들이 스스로 판단한 범죄사건 정식 보고율³²⁾을 나타낸 <참고표 3>(탁종연, 2006)을 보면, 그러한 실상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참고표 2>과 <참고표 3>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신고접수율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상대적으로 심각한 범죄는 신고접수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신고접수율이 낮아지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경향성은 각 범죄유형들에 대한 범죄암수추정이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1건으로 기록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리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피해자수 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사건보고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할 수 있다.

32) 이는 경찰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그런데, <참고표 2>에서처럼 ‘신고된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해 주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율과 기록률을 곱하여 범죄암수추정의 사후검증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³⁾. 하지만,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신고한 범죄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지된 신고접수율이 피해조사에서 측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다행히 2008년 피해조사의 설문문항 중에는 신고접수여부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할 만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검증을 수행해 보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와 함께 몇몇 자료³⁴⁾를 추가적으로 이용해 범죄암수추정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참고표 2〉 199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범죄신고율과 범죄기록률

단위: %

범죄 종류		신고율	기록률
기물파괴		28	56
침입절도		73	63
	재산손실 없음	53	41
	재산손실 있음	92	74
자동차침입절도		53	61
자동차절도		99	94
강도		49	48

※ 원자료출처 : 영국범죄피해조사, 1992. Sanderson [1994] 2001, 김형만 · 이동원 역: 64.

33) 즉 피해조사상 피해율에다가 (신고율×신고접수율)을 곱하면, 공식통계상의 범죄율과 어느 정도까지는 유사해질 수 있고, 그 유사성의 정도 여부로 대략적인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34) 특정범죄의 고소사건비율, 신고에 의한 인지비율, 검거율 등.

〈참고표 3〉 경찰의 범죄유형별 정식보고율(2006년 국내 조사자료)

단위: %

정식보고율	범죄유형				
	강도	강간	기타성범죄	폭력/상해	절도
90%이상	60.2	53.5	46.1	44.1	31.6
75-89%	20.2	16.9	17.7	26.9	27.5
50-74%	10.2	16.0	22.6	20.4	24.6
25-49%	4.5	7.0	7.4	6.1	11.9
25% 미만	4.5	6.6	6.2	2.4	4.5
총계	100%(N=244)	100%(N=243)	100%(N=243)	100%(N=245)	100%(N=244)

※ 자료출처 : 탁중연, 2006 : 70.

IV. 주요 범죄유형들의 공식통계상 발생률과 범죄피해조사 피해율

1. 절도범죄

1) 주거침입절도

2008년 피해조사에서 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미수포함)과 ‘재산탈취피해’(미수포함), ‘재산탈취의 은밀성’(무언가를 몰래 가져간 경우)의 판별조합에 따라 그 피해 해당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다(김은경 외, 2009 : 108). 여기서 주거침입절도 피해율은 피해가구수를 기준으로 10만 가구 당 2420.4가구로 나타났고,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엔 10만 가구 당 2632.7건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2008년도 공식통계상에 나타난 주거침입절도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법률적 정의에 ‘주거침입절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통계상 제시되는 범죄유형과 항목에도 이 범주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인 『범죄분석』에는 “절도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대검찰청, 2009a : 157)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 이를 토대로 공식통계상 기록된 주거침입절도 발생건수를 대략 계산해 낼 수 있으며, 그 계산 결과는 38,408건이

다. 이 수치는 2008년도 10만 가구 당 230.4건의 주거침입절도범죄가 공식범죄로 기록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공식통계상 발생률을 피해건수가 아닌 피해자단위로 계산해보는 것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위험성 높은 추정작업이기는 하나, 그 대략적 계산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식통계상 전체 절도와 주거침입절도 사이의 비율을 알고, 공식통계에 제시된 전체 절도 피해자수치에 이 비율을 이용하면 비례식을 통해 2008년도 10만 가구 당 대략 220.6가구³⁵⁾가 주거침입절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비교표 1-A>는 2008년도 주거침입절도의 공식범죄율과 조사피해율을 비교하기 용이한 형태의 표로 작성해 본 것이다.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조사된 주거침입절도 범죄피해율은 공식기록된 범죄율보다 11.4배가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이 자료들에 의하면, 공식기록된 범죄사건은 숨은 범죄를 포함한 주거침입절도 전체에서 8.6%의 비중이라고 추정된다.

〈비교표 1-A〉 2008년도 주거침입절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구분	A범죄피해율*	B공식발생률**	A/B	추정범죄처리율***
피해건수기준	2632,7건1)	230,4건2)	11.4배	8.6%
피해가구기준	2420,4가구3)	220,6가구4)	10.9배	9.1%
1가구 당 평균 피해건수	1.09	1.04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주거침입절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주거침입절도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124 \div 4,710) \times 100,000$. 2) $(38,408 \div 16,673,162) \times 100,000$, 16,673,162는 2008년도 추계가구수.

3) $(114 \div 4,710) \times 100,000$. 4) $(36,776 \div 16,673,162) \times 100,000$, 36,776은 공식통계상 피해자수 등을 통해 추정.

2008년도 피해조사에서는 피해자 신고율이 30.6%, 가중치로 계산하면 33.8%로 나타났다. 만약 피해조사가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범죄를 모두 포착해 낸 것이

35) 비례식(2008년 전체절도건수223,259 : 동년 주거침입절도건수38,408 = 동년 전체절도피해자수 213,772 : X)을 이용한 것이다(대검찰청, 2009a : 157, 170 자료 근거 산출). X는 36,776명으로 계산될 것이다. 보통 주거침입절도가 발생하면 공식통계에 기록되는 그 피해자수는 그 가족의 구성원수 전체가 아니라 가구주 등 대표자 1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엔 피해자수와 가구수가 사실상 같은 수치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36,776명은 36,776가구로 간주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수치를 가지고 2008년 추계가구수인 16,673,162가구를 기준으로 10만 가구당 공식피해가구수를 계산하면 220.6가구가 된다. 이후 이와 유사한 비례계산식은 모두 생략하겠다.

고, 공식통계상 주거침입절도가 오로지 피해자신고에 의해서만 인지된 것이며, 신고된 범죄가 모두 공식통계로 확정된 것이라는 세 가지 가정이 완벽하게 충족될 경우에는 피해자신고율과 추정범죄처리율이 같거나 비슷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교표 1-B>에서 보다시피 양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8.6%와 33.8%)가 존재한다.

모든 신고가 곧바로 공식통계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탁중연의 연구결과(탁중연, 2006)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고된 사건 중 적지 않은 사건, 특히 경미한 사건이나 범인 체포가 난망한 사건들은 경찰에 의해 공식통계로 정식 보고되지 않고 누락되기도 한다. 따라서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상의 피해자신고율 사이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누락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점을 유념하면서 주거침입절도가 —오로지 피해자신고에 의해서만 인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자가 신고한 주거침입절도 중 25.4%(가구가중치 피해자신고율 이용시)만이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³⁶⁾되었다고 추정해 낼 수 있게 된다³⁷⁾.

<비교표 1-B> 2008년 주거침입절도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사건 기준)비교

단위 : %

신고를 가중치부여	추정범죄처리율	피해조사신고율	추정신고접수율*
비가중치	8.6	30.61)	28.1
가구가중치부여		33.82)	25.4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주거침입절도 피해사례 124건 중 38건(30.6%)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 36) ‘공식접수’라는 용어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선 경찰의 경우, 최근 들어 경찰이 공식접수하지 않는 사건은 거의 없다는 항변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도 본다. 하지만, 필자가 ‘추정신고접수율’이란 용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범죄가 최종적으로 공식범죄통계로 집계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일선 경찰에서 경찰관이 어떤 사건을 ‘공식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공식범죄통계로 기록(즉 범죄원표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공식접수’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 37) 물론, 이것만으로도 여전히 그 계산이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범죄의 일정 부분은 피해자 신고가 아닌 다른 경우, 즉 제3자 신고, 현행범체포나 그 밖의 경찰의 직접 인지(탐문수사, 여죄인지 등)에 의해서도 공식통계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대인절도

2008년도 피해조사상의 대인절도 피해율과 공식통계상의 대인절도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은 주거침입절도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단순히 생각할 경우, 공식통계상 전체절도에서 침입절도를 제외하면 대인절도가 될 것 같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치 않다. 침입절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절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한 사건들³⁸⁾이 대거 포함³⁹⁾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피해조사에서 대인절도는 ‘주거침입’이 아니면서 ‘재산탈취피해’를 당하고 ‘재산탈취의 은밀성’이 수반되었을 때 그 피해 해당여부가 결정된다(김은경 외, 2009 : 109). 따라서 이에는 자동차절도나 자동차부품절도가 포함될 수도 있음은 물론,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절도행위들 역시 포함될 수 있다⁴⁰⁾. 하지만, 본고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식범죄상의 ‘치기절도’와 ‘속임수절도’, ‘차량이용절도’만을 대인범죄로 간주⁴¹⁾하고 그 암수를 추정했다.

38) 일례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누군가 이를 습득하여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지만, 그 사람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자동현금출납기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절도 혹은 절도미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특히 절도미수의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이를 절도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39) 『범죄분석』에 제시되어 있는 절도수범은 크게 ‘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 절도’, ‘기타’의 유형으로 구별되어 그 각각의 건수가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는 바로 ‘기타’ 유형의 절도범죄이다. ‘기타’의 구체적 내용은 「범죄분석」에 나타난 통계수치만 봐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그 비중마저 매우 크다. 2008년의 경우, 그 비중은 51.1%(223,259건 중 129,810건)에 달한다.

40) 2008년도 이전의 피해조사들에서는 대인절도가 ‘소매치기’, ‘날치기’ 등 이른바 치기범죄에 국한되어 공식통계와의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그 범위가 넓어져 비교가 더 어려워졌다.

4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대인절도 범주는 공식통계상 절도 범주 중 어느 하위 유형 범위까지 비교하기에 적합한 것일까? ‘기타’ 범주가 포함될 것인가? 만약 혹시라도 포함된다면, 그 전부가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포함될 것인가? 만약 일부만 포함된다면, 더 이상의 엄밀한 추정의 길은 막힌다. ‘기타’ 범주를 더 작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단지 ‘차량이용절도’ 및 ‘속임수절도’, 그리고 ‘치기범죄들’만을 대인범죄로 간주하는 방법과 거기에서 ‘기타범죄’를 합산한 수치를 대인범죄로 간주하는 두 가지의 추정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추정을 해보았다. 추정 결과, ‘치기범죄 및 차량이용절도와 속임수절도’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나마 더 현실적인 추정에 가까울 것이라

<비교표 2-A>를 보면, 우선 2008년 피해율은 피해자수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 당 2876.9명, 피해건수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 당 3139.3건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가정했던 방식으로 공식통계상 대인절도 발생률을 계산하면, 피해건수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40.8건(48,606,787명 중 19,847건⁴²⁾), 피해자수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 당 39.1명임을 볼 수 있다. 두 자료를 피해건수 기준으로 비교해 볼 경우, 조사된 대인절도 피해율은 공식기록된 대인절도 범죄율보다 76.9배가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이 자료들에 의하면, 공식범죄사건은 숨은 범죄를 포함한 대인절도 전체에서 1.3%의 비중이라고 추정된다.

〈비교표 2-A〉 2008년도 대인절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구분	A범죄피해율*	B공식발생률**	A/B	추정범죄처리율***
피해건수기준	3139.3건1)	40.8건2)	76.9배	1.3%
피해자수기준	2876.9명3)	39.1명4)	73.6배	1.4%
1인 당 평균 피해건수	1.09	1.04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대인절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대인절도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335 \div 10,671) \times 100,000$. 2) $(19,847 \div 48,606,787) \times 100,000$, 48,606,787은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

3) $(307 \div 10,671) \times 100,000$. 4) $(19,004 \div 48,606,787) \times 100,000$, 19,004은 공식통계상 피해자수 등을 통해 추정.

한편, 2008년 조사에서는 대인절도 신고율이 12.5%, 가중치로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신고한 대인절도 범죄 중 11.1%만이 경찰에 의해 공식접수 되었다고 추정해 낼 수 있게 된다.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기타’를 포함할 경우, 현실-논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타’를 포함할 경우, 대인범죄의 숨은 범죄비율은 대인강도의 숨은 범죄비율보다 훨씬 적어진다. 또한 그럴 경우, 그 대인절도범죄 적발률(혹은 범죄처리율)은 주거침입절도는 물론 주거침입강도의 적발률과 비슷해지거나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42) 소매치기 2,380건, 낚치기 3,391건, 들치기 11,079건, 차량이용절도 1건, 속임수절도 2,996건의 합산치이다.

〈비교표 2-B〉 2008년도 대인절도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사건 기준) 비교

단위 : %

신고율 가중치부여	추정범죄처리율	피해조사신고율	추정신고접수율*
비가중치	1.3	12.51)	10.4
가구원가중치부여		11.72)	11.1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대인절도 피해사례 335건 중 42건(12.5%)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2. 강도범죄

1) 주거침입강도

2008년 조사에서 주거침입강도는 ‘주거침입’(미수포함)과 ‘재산탈취피해’(미수포함), 그리고 ‘재산탈취의 강제성·폭력성’(강제성 또는 폭행 여부)의 판별조합에 따라 그 피해 해당여부가 결정되었다(김은경 외, 2009 : 108). 그 피해율은 10만 가구 당 63.7건이자 63.7가구로 환산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공식통계상 주거침입강도는 강도범죄발생지역을 기준으로 발생지역이 주거지인 경우만을 주거침입강도로 간주하고⁴³⁾, 그에 따라 그 공식발생률이 10만 가구 당 6.2건, 10만 가구 당 6.1가구가 된다는 계산을 따랐다.

<비교표 3-A>에서 볼 수 있듯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2008년 조사에서의 주거침입강도 추정범죄처리율은 9.7%로 계산되는데, 이는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주거침입강도사건 중에서 9.7%만이 공식통계에 기록되었다는 뜻이다.

43) 이는 『범죄분석』에 절도와 달리 강도의 범죄발생장소와 수범이 교차되어 나타난 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방법이다. 범죄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2008년 공식통계상 주거침입강도 발생건수를 계산해 보면, ‘아파트·연립·다세대’가 394건, ‘단독주택’이 645건으로 총 1,039건이다. 하지만, 이것도 침입강도범죄의 정확한 범위는 아닐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발생장소가 반드시 침입을 전제로 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보다 약간 더 작은 수치가 아닐까 싶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어떤 수치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기에 필자는 부득불 1,039건을 공식통계상의 주거침입강도 발생건수로 간주하였다.

〈비교표 3-A〉 2008년도 주거침입강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구분	A범죄피해율*	B공식발생률**	A/B	추정범죄처리율***
피해건수기준	63,7건1)	6,2건2)	10,3배	9,7%
피해가구기준	63,7가구3)	6,1가구4)	10,4배	9,6%
1가구 당 평균 피해건수	1,00	1,02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주거침입강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주거침입강도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3 \div 4,710) \times 100,000$. 2) $(1,039 \div 16,673,162) \times 100,000$, 16,673,162는 2008년도 추계가구수.

3) $(3 \div 4,710) \times 100,000$. 4) $(1,013 \div 16,673,162) \times 100,000$, 1,013은 공식통계상 피해자수 등을 통해 추정.

다음 <비교표 3-B>를 볼 경우, 2008년도 피해조사에서는 주거침입강도 피해사례 3건 중 2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신고율이 66.7%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가중치로 계산하면 67.8%이다. 그러나 신고율 계산치의 분모가 되는 사건의 수가 워낙 적은 탓에 이와 같은 신고율은 크게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강도의 피해자신고율이 상식적으로도 높을 것이란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며, 앞서 살펴본 주거침입절도 신고율(33.8%)보다 높을 것이란 추측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수치가 아주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기는 하다. 비록 불안정한 신고율 수치이기는 하나, 이 수치와 추정범죄처리율을 이용하여 추정신고접수율을 계산해보면, 14.3%가 된다⁴⁴⁾.

44) 이는 앞서 살펴본 대인절도의 추정범죄처리율(1.3%)보다야 높기는 하지만, 주거침입절도의 추정범죄처리율(25.4%)보다 낮은 수치이며, 심지어 뒤에서 살펴볼 대인강도의 추정범죄처리율(15.9%)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심각한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주거침입강도의 신고접수처리율이 침입절도보다 낮은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2008년도 피해조사에서 주거침입강도가 최소 사례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신고율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점, 공식통계 내에서의 주거침입강도 계산치가 불안정했을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오차 요인에 의해 발생된 ‘그릇된 결과’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볼게 될 또 다른 요인들까지 고려해볼 경우, 위와 같은 추정들이 오히려 현실에 가까운 추정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비교표 3-B〉 2008년 주거침입강도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사건 기준)비교

단위 : %

신고율 가중치부여	추정범죄처리율	피해조사신고율	추정신고접수율*
비가중치	9.7	66.71)주의	14.5주의
가구가중치부여		67.82)주의	14.3주의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주거침입강도 피해사례 3건 중 2건(66.7%)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 주의 : 극소사례에서 계산된 피해율 혹은 그 피해율에 근거한 계산치이므로 매우 불안정할 수도 있음.

2) 대인강도

2008년도 조사에서 대인강도는 ‘주거침입’이 아니면서 ‘재산탈취피해’를 당하고 ‘재산탈취의 강제성·폭력성’이 수반되었을 때 그 피해해당 여부가 판정된다(김은경 외, 2009 : 109). 강도는 절도처럼 모호한 하위유형이 많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인강도는 대체로 전체강도에서 침입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의 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대인강도 피해율은 인구 10만 명 당 262.4건 혹은 262.4명이다. 한편, 공식통계상에서 대인강도는 침입강도와 강도강간⁴⁵⁾을 뺀 나머지 강도건수로 그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럴 경우, 공식통계상 대인강도 발생기록건수는 3,095건⁴⁶⁾으로 계산된다.

<비교표 4-A>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인강도 피해율은 인구 10만 명 당 262.4건, 공식통계상의 대인강도 발생기록률은 인구 10만 명 당 6.4건으로 계산된다. 이는 범죄암수를 포함한 실제 대인강도 사건이 공식통계에 기록된 대인강도 사건보다 41.0배가 많다는 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추정범죄처리율을 2.4%⁴⁷⁾로 계산해 낼 수 있다.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대인강도사건 중

45) 강도강간이 주로 주거침입강도에서 돌변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가정하에 제외된 것이다. 물론 주거침입강도와 연관되지 않는 강도강간도 있을 수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공식통계(『범죄분석』)에 제시된 자료에서 강도강간이 주거침입강도와 연관되는 강도강간과 그렇지 않은 강도강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46) 공식통계상 전체 강도범죄건수 4,827건에서 침입강도 1,687건과 강도강간 45건을 뺀 수치이다. 이 수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다. 즉, 노상강도(855건)+차내강도(48건)+해상강도(0건)+차량이용강도(61건)+약취강도(85건)+마취강도(129건)+인질강도(0건)+기타강도(1,917건)=3,095건이다.

공식통계화 되는 비율이 2.4%라는 것이다.

〈비교표 4-A〉 2008년도 대인강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구분	A범죄피해율*	B공식발생률**	A/B	추정범죄처리율***
피해건수기준	262,4건1)	6,4건2)	41.0배	2.4%
피해자수기준	262,4명3)	6,3명4)	41.7배	2.4%
1인 당 평균 피해건수	1.00	1.02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대인강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대인강도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28 \div 10,671) \times 100,000$. 2) $(3,095 \div 48,606,787) \times 100,000$, 48,606,787은 2008년도 연양추계인구.

3) $(28 \div 10,671) \times 100,000$. 4) $(3,018 \div 48,606,787) \times 100,000$, 3,018은 공식통계상 피해자수 등을 통해 추정.

〈비교표 4-B〉 2008년도 대인강도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사건기준)비교

단위 : %

가중치부여 여부	추정범죄처리율	피해조사신고율	추정신고접수율*
비가중치	2.4	17.91)	13.4
가구원가중치부여		15.12)	15.9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 $\times 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대인강도 피해사태 28건 중 5건(17.9%)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2008년 조사에서는 대인강도 피해사태 28건 중 5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신고율이 17.9%, 가중치로 15.1%였다. 추정신고접수율은 15.9%로, 피해자가 대인강도를 신고했을 때, 공식적인 사건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대략 15.9%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7)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인절도의 추정범죄처리율(1.3%)보다는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이긴 하다. 적어도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대인절도의 범죄암수가 대인강도의 암수보다 대체로 클 것이라는 상식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대인강도의 범죄암수추정치가 —적어도 다른 범죄유형의 범죄암수추정치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추정치에 대비한 대인절도 암수추정 역시 그다지 큰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보기도 한다.

3. 성폭력범죄와 신체상해범죄

1) 성폭력범죄(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암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법률명에 성폭력범죄라는 것은 없고, 공식통계에서도 그 같은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강간이라는 법률명’과 ‘공식통계상의 강간이라는 범주’가 있기는 하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는 대체로 공식통계상의 강간범주에 해당되고, 피해조사에서는 강간과 (강제)성추행을 합친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단, 법률상의 강간죄는 강제추행과 구별되지만, 공식통계상의 강간범주는 강제추행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⁴⁸⁾이다.

2008년 조사에서 혐의의 ‘전형적’ 강간범죄는 강간위협 및 강간, 그리고 강간미수가 모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강제추행은 대체로 형법상의 강제추행(미수포함)과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조사에서 강간피해자는 2명⁴⁹⁾, 2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한편, 강제추행(성추행)피해자는 25명, 25건이었다. 이 중 24명은 여성이었고, 나머지 1명은 남성이었다. 표본의 확대로, ‘전형적인 강간’이라는 희귀 사례가 포착되었으니 이를 공식통계범죄와 비교하여 범죄암수를 추정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공식통계에서는 ‘전형적인 강간범죄’를 따로 구분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작업은 쉽지 않다⁵⁰⁾. 따라서 일단은 피해조사의

48) 2008년도 공식통계에서의 강간 범주에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8장 제297조에서 제309조까지)가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만, 동법 제23조, 제25조, 제31조 위반 제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을 포함(대검찰청, 2009a : 일러두기 항목 참조)하고 있다. 다른 모든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식범죄통계상 강간범주에는 미수·방조·예비·음모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49) 표본이 2,000사례 정도였던 과거 피해조사에서는 ‘전형적인 강간’이 좀처럼 포착되지 않았는데, 이번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표본수가 1만 명이 넘다보니 ‘전형적인 강간’ 사건이 2건이나 포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구 5,000명 중의 한 명 꼴 혹은 여성 인구 2,500명 중의 한 명 꼴이니 남녀합산 2,000사례 표본에서 강간범죄가 포착되지 않아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피해조사에서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수 자체가 축소되어 있을 경우 이 보다는 높은 피해율로 계산될 것이긴 하다. 사회통념상, 특히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강간범죄 피해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범죄피해조사에서조차도 응답하지 않을 개연성이 아주 없다고만은 하지 못할 것이다.

50) 범죄통계에서 ‘전형적인 강간’을 공식적으로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조

강간과 강제추행을 합쳐 ‘성폭력’으로 규정한 다음, 이를 공식통계상의 강간 범주와 비교하여 그 암수를 추정하는 것이 일단은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폭력범죄 암수추정은, 보통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여성피해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을 기준으로 하겠다. 다음 <비교표 5-A>를 보면, 피해조사에서의 여성 성폭력피해자의 비율은 여성인구 10만 명 당 467.7명으로 계산된다.

이에 비해, 공식통계에서는 여성인구 10만 명 당 58.3명⁵¹⁾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 중 피해조사에서의 성폭력피해율을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범죄발생률’로 간주할 경우, 이는 공식통계에 기록된 성폭력범죄(공식통계상 명칭은 ‘강간’)의 8배에

사의 강간범죄 피해율을 공식통계상의 ‘전형적인 강간’과 비교하여 그 범죄암수를 추정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전형적인 강간사건’에서는 ‘상해피해’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공식통계인 『범죄분석』에는 각 피해자들의 상해자수 통계가 제시되어 있고, 강간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상해를 입은 경우(2008년도 930명)엔 ‘전형적인 강간’에 해당될 확률이 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전형적인 강간’ 사건의 범죄암수를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피해율은 여성 인구 10만 명 당 36.0명, 공식발생률은 여성 인구 10만 명 당 3.6명이 되어 추정범죄처리율은 10.6%로 계산된다. 그러나 상해를 전제로 하여 ‘전형적인 강간범죄’를 추산하는 것은 강간미수 등을 제외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정하다. 오히려 앞의 방법으로 계산된 수치(930명)는 ‘강간상해’와 ‘강간치상’에 해당될 개연성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대검찰청의 또 다른 통계자료인 『검찰연감』(대검찰청, 2009b)에 의거하여 계산을 다시 할 경우, 위 계산은 크게 빗나간 것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검찰연감』 통계는 검거된 피의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범죄분석』과는 다른 통계이기기는 하지만, 『범죄분석』보다 좀 더 세분화된 통계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참조할 가치가 있다. 이 통계에서 2008년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접수처리된 피의자는 총 9,588명인데, 그 중 ‘강간과 준강간’만 2,337명(가해자기준)이다. 즉 이 수치만으로도 위의 930명(피해자기준)보다 훨씬 많게 된다. 또한 2,337명이라는 수치 외에도 강간상해가 279명, 강간치상이 994명, 강간살인이 6명, 강간치사가 5명, 미성년자간음(지항능력 결여와 관련해 사실상 강간으로 간주됨)이 17명, 미성년자강간이 35명으로 이 모든 수치를 합산하면 3,673명이나 된다. 이를 대략 피해자수로 간주하고, 전형적인 강간 사건의 암수를 다시 추정해 보면, 위와는 크게 다른 추정이 나오게 되며 범죄암수는 훨씬 줄어들게 됨은 물론이다. 즉 이 경우 공식통계상의 전형적인 강간범죄의 여성인구 10만 명당 발생비는 15.2명이 되고, 그에 따라 추정범죄처리율은 42.2%로 늘어난다(범죄암수를 포함한 실제 발생률 추정치가 공식통계의 2.4배 많은 것으로 계산). 어쩌면 전형적인 강간사건의 경우 이 계산이 좀 더 현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연감』과 『범죄분석』 사이에 존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괴리로 인해 이 역시 확인하기는 어렵다. 가령 『범죄분석』에서 2008년 ‘강도강간’이 총 45건인데, 『검찰연감』에서는 같은 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피의자’만 319명이다. 아무튼 공식통계의 실상이 좀 더 확연히 드러나기 전에는 ‘전형적인 강간’ 사건의 암수추정은 계속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1) 2008년도 전체여성인구(연앙추계인구 중 여성인구) 24,190,904명 중 공식통계상 여성성폭력(공식 통계분류상의 ‘강간’)피해자수 14,094명(대검찰청, 2009a : 171 참조)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중 8명 중 1명의 경우에만 공식통계로 기록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추정범죄처리율이 12.5%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비교표 5-A〉 2008년도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구분		A범죄피해율*	B공식발생률**	A/B	추정범죄처리율***
피해건수기준	여성	467,7건1)	58,9건2)	7.9배	12.6%
	(전체)	(253,0건)3)	(31,1건)4)	(8.1배)	(12.3%)
피해자수기준	여성	467,7명5)	58,3명6)	8.0배	12.5%
	(전체)	(253,0명)7)	(30,7명)8)	(8.2배)	(12,1%)
여성 1인 당 평균 피해건수		1.00	1.01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성폭력(강간+강제추행)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강간범죄 입력 ·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26 \div 5,559) \times 100,000$. 2) $(14,259 \div 24,190,904) \times 100,000$, 24,190,904는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 중 여성인구.

3) $(27 \div 10,671) \times 100,000$. 4) $(15,094 \div 48,606,787) \times 100,000$, 15,094는 2008년도 공식통계 전체 강간범죄건수.

5) $(26 \div 5,559) \times 100,000$. 6) $(14,094 \div 24,190,904) \times 100,000$, 14,094는 공식통계 강간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수.

7) $(27 \div 10,671) \times 100,000$. 8) $(14,919 \div 48,606,787) \times 100,000$, 14,919는 공식통계 강간범죄 전체 피해자수.

이 같은 추정결과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특히 1996년(최인섭 · 김성언, 1998, 222배)과 2006년(김승권 외, 2008, 168.4배)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극심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극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주로 범죄피해의 측정방식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듯싶다. 즉 2008년도 피해조사는 기존의 피해조사들에 비해 범죄 혹은 범죄피해의 정의가 법률상의 정의에 근접할 정도로 엄격하고 측정방식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개연성이 높다⁵²⁾.

52) 2008년 성폭력피해율이 과소추정되었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008년 조사에서 성폭력범죄(강간 · 강제추행)가 조합되는 조건식은 성폭력적 행위의 시도에 덧붙여 ‘폭행여부(최소한 폭행시도 · 미수)’가 조건식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은경 외, 2009 : 109). 이럴 경우, 조상의 성폭력범주는 현실적인 법률상의 구성요건에 근접하게 되는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폭력보다는 크게 협소해질 공산이 커지게 된다. 어쩌면 이 요인이야말로, 2008년 조사에서 성폭력피해가 우리나라의 역대 그 어느 피해조사에의 성폭력피해율보다도 적게 나온 이유일 수 있다. 2008년 조사에서의 성폭력피해율은 이전까지 가장 적은 피해율을 기록하였던 2002년도 피해율인 1.28%(인구 1,000명 당 12.8명,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 60)보다도 4분의 1이

다음 <비교표 5-B>를 볼 경우, 2008년도 피해조사에서는 여성 성폭력범죄 피해 사례 26건 중 3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 신고율이 11.5%, 가중치로 16.1%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계산되는 추정신고접수율은 77.6%에 달한다.

〈비교표 5-B〉 2008년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여성기준)

단위 : %

가중치부여 여부	추정범죄처리율	피해조사신고율	추정신고접수율*
비가중치	12,5	11,51)	108,7
가구원가중치부여		16,12)	77,6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여성대상 성폭력(강간+강제추행) 피해사례 26건 중 3건(11.5%)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2) 신체상해범죄

2008년 피해조사에서는 성폭력을 제외한 일반적 의미의 폭력범죄에 ‘단순폭행’과 ‘심한폭행’, ‘협박·괴롭힘’ 피해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오로지 ‘심한폭행’의 범죄암수만을 추정하고자 한다⁵³⁾. 2008년 조사에서 ‘심한폭행’의

نسبة 감소한 0.3%(인구 1,000명 당 3명, 김은경 외, 2009 : 158)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종전의 피해조사에서 피해율이 대체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온 경향(황지태, 2009b)을 감안하면, 이는 일정 정도까지는 피해율의 감소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 감소율이 매우 큰 것을 고려하면 앞서 지적한 요인의 영향이 더 지대할 것이라 판단된다.

- 53) 그 이유는 앞서 ‘연구방법’에서 말한 바와 같다. 혹시라도 ‘단순폭행’의 경우, 비교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 2008년 피해조사에 포착된 단순폭행은 도저히 공식통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참고로, ‘원보고서’(김은경 외, 2009)에는 ‘단순폭행’과 ‘심한폭행’이 ‘폭행·상해’로 합산되어 계산되어 있다. 그 합산치는 총 41명(43건)이다. 그런데, 이 41명의 폭행·상해 피해자를 ‘단순폭행’과 ‘심한폭행’으로 분할해보면, ‘단순폭행’피해자가 21명(23건)이고, ‘심한폭행’피해자가 22명(22건)이 나온다. 두 범죄의 피해자수가 비슷하게 나온 것이며, ‘심한폭행’피해자가 더 많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사실상 이는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결과이다. ‘심한폭행’이 ‘단순폭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엉뚱한 결과가 피해조사에서 발생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추정컨대 아마도 ‘폭행’ 개념이 고무줄과 같이 쉽게 늘고 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단순폭행’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판별기준은 사실상 폭행에 의한 신체피해여부이다(김은경 외, 2009 : 109)⁵⁴⁾. 피해조사에서 ‘심한폭행’이 위와 같이 규정되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공식통계상의 범죄는 언뜻 ‘상해범죄’와 일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상해범죄에는 상해미수 역시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조사에서처럼 실제적인 신체피해가 있는 경우와 맞아떨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피해가 확인된 상해범죄만을 추려내어 비교해도 여전히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신체피해가 발생한 폭력범죄는 상해범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죄(이하 폭처법)에 의해 처벌되기도 하며, 두 가지가 경합될 경우에도 공식통계에서는 폭처법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2008년 피해조사에서의 ‘심한폭행’에 대응되는 공식통계상의 범죄는 ‘상해범죄’ 중 ‘신체폭력’이 발생한 범죄와 ‘폭처법’ 중 ‘신체폭력’이 발생한 범죄의 합산으로 계산해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범죄분석』에는 “신체피해상황”통계(대검찰청, 2009a : 226)와 “신체피해정도”통계(앞의 문헌 : 227)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두 통계상의 상해사건수는 서로 다르며, 그 차이도 꽤 크다⁵⁵⁾. 전자의 경우는 좀 더 범위가 넓은 신체피해를 포괄한 수치이고, 후자의 경우는 “진단서를 땄 정도(실제로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의 상해피해”의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피해조사에서의 ‘심한폭행’ 피해는 사실상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후자와 비교되어야 한다고 판단⁵⁶⁾한다.

‘폭행’으로 인식하지조차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그 폭행의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무튼 ‘심한폭행’이 22명이 발견되었는데, ‘단순폭행’이 21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폭행’피해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만하다.

- 54)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충기에 의한 부상”, “빠나 이빨이 금가거나 부러짐(신체골절)”, “장기 손상을 입음”, “기절함(의식불명)”,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중에서 어느 한 가지의 신체피해라도 입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앞의 문헌 : 516). 이는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만하다.
- 55) 『2009범죄분석』의 “신체피해상황”통계에서는 상해피해자 중 38,449명이 신체피해를 입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데 비해, “신체피해정도”통계에서는 상해피해자 중 20,396명이 상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양 수치간의 차이가 꽤 크다(대검찰청, 2009a : 226-227).
- 56) 두 가지 통계를 모두 이용해 ‘심한폭행’의 범죄압수를 추정한 결과, 전자의 통계(신체피해상황통계)를 사용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 즉 그 경우엔 추정신고접수율이 100%를 상회하는 130% 정도로 계산된다. 이는 10건을 신고하면, 13건이 접수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다음 <비교표 6-A>를 보기로 하자. 표에서 피해조사상의 ‘심한폭행’범죄 피해율은 인구 10만 명 당 206.2명으로 계산되고, 이에 대응하는 공식통계상의 범죄는 인구 10만 명 당 57.7명⁵⁷⁾으로 계산됨을 볼 수 있다.

<비교표 6-A> 2008년도 상해범죄(실질상해)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구분	A범죄피해율*	B공식발생률**	A/B	추정범죄처리율***
피해건수기준	206,2건	62,7건	3.3배	30.4
피해자수기준	206,2명	57.7명	3.6배	28.0
1인 당 평균 피해건수	1.00	1.09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신체상해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상해·특기법 중 실질상해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22 \div 10,671) \times 100,000$.

2) $(30,461 \div 48,606,787) \times 100,000$, 30,461은 아래 28,027 등을 토대로 추정해낸 값.

3) $(22 \div 10,671) \times 100,000$.

4) $(28,027 \div 48,606,787) \times 100,000$, 28,027은 상해죄내 실질상해자수+폭처법내 실질상해자수.

이를 토대로 피해율을 공식발생률로 나누면, 암수를 포함한 실제 ‘심한폭행’범죄가 공식통계에 기록된 해당 범죄의 3.6배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추정범죄처리율은 28.0%가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어떤 추정범죄처리율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⁵⁸⁾.

<비교표 6-B>를 볼 경우, 2008년 피해조사에서는 ‘심한폭행’ 피해사례 22건 중 7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신고율이 31.8%, 가중치로 계산하면 30.3%였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 어떤 범죄유형의 경우보다는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 사이의 간극이 좁다. 그에 따라, 추정신고접수율은 무려 92.4%에 달한다. 즉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신고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공식통계로 접수되었다는 의미이다.

57) 인구 10만 명 당 57.7명이라는 수치는 28,027명이라는 수치를 2008년 연앙추계인구로 나눈 뒤 10만을 곱한 것인데, 여기서 28,027이라는 수치가 바로 공식통계 내 ‘상해범죄’ 피해자 중 ‘전치2주 이하’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수(20,396명)와 ‘폭처법’ 피해자 중 ‘전치2주 이하’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수(7,631명)를 합친 수치이다.

58) 이는 비교적 심각한 내용의 특정 범죄들만의 암수추정을 할 때 생기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여기에 단순폭행이 포함되었다면, 추정범죄처리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교표 6-B〉 2008년 상해범죄(실질상해)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 비교

단위 : %

가중치부여 여부	추정범죄처리율	피해조사신고율	추정신고접수율*
비가중치	28.0	31.81)	88.1
가구원가중치부여		30.32)	92.4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신체상해 피해사례 22건 중 7건(31.8%)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V. 종합비교 및 범죄암수추정치의 현실 적합성 검토

지금까지 각각의 범죄유형들에 대한 암수추정을 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그 같은 추정결과가 어느 정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다음 <비교표 7>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각 범죄암수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차이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내에서 암수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대인절도이고, 그 다음은 대인강도이다. 나머지 범죄들은 이 두 유형의 범죄만큼 암수율이 높지 않은데,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성폭력, 심각한폭행의 순으로 암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순위는 대체로 범죄내용의 심각성에 어느 정도 비례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위 범죄들 중에서는 심각한폭행의 경우가 평균수준에서는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되기에 충분하다⁵⁹⁾. 또한 언뜻 보아도, 절도에 비해 강도의 암수율이 낮다는 점, 절도와 강도를 세분화할 경우 암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범죄가 주거침입강도, 그 다음이 주거침입절도, 대인강도, 대인절도 순이었다는 점도 대체로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침입강절도와 대인강절도 사이의 암수율 차이가 큰 것 역시 현실적 개연성이 높다. 각 범죄유형들의 피해자신고율 역시 대체로 상식에 부합해 보인다. 즉, 주거

59) 물론 심각한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일 경우 혹은 단순폭행과 심각한폭행이 합산되어 범죄암수가 추정되었을 경우엔, 암수율이 위 표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아졌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오로지 심각한 내용(흉기 등에 의한 상해)의 폭력범죄만을 뽑아냈기에 범죄암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추정범죄처리율이 높고), 신고율도 높고, 신고접수처리율도 높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심각한폭행의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인절도, 대인강도, 성폭력범죄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비교표 7〉 각 범죄유형의 추정범죄암수·피해자신고율 등에 대한 종합비교

단위 : %

구분	추정 범죄암 수율	추정 범죄처 리율	피해자 신고율	추정 신고 접수율	피해자 사건처리 인지율*	공식범죄 내 신고사 건 비율**	공식범죄내 고소사건 비율***	공식범죄내 가해자기지 비율****	공식 범죄내 검거율*****
주거침입 절도	91.4	8.6	33.8	25.4	47.4	77.0	1.5	19.6(7.7)	50.9
대인절도	98.7	1.3	11.7	11.1	25.1				
주거침입 강도	90.3	9.7	67.8 주의	14.3 주의	50.0 주의	69.7	1.5	16.3(14.1)	85.6
대인강도	97.6	2.4	15.1	15.9	24.4				
성폭력	87.5	12.5	16.1	77.6	33.3주의	84.1	19.1	23.9(21.4)	89.9
심각한폭행	72.0	28.0	30.3	92.4	76.3	95.8	16.2	41.9(41.9)	96.5

* 2008년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 (“경찰은) 당신에게 신고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의 비중.

** 공식범죄통계에서 “미신고”범주를 제외한 신고사건들(대검찰청, 2009a : 160-161. 참조)의 비중.

*** 공식범죄통계에서 수사단서가 “고소”와 “고발”인 사건들(앞의 문헌 같은 쪽 참조)의 비중.

**** 공식범죄통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가 “타인”, 그리고 “미상”이 아닌 경우(앞의 문헌 : 314-315. 참조)의 비중. 괄호 안의 수치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계산(재추정)해낸 수치임.

***** 공식범죄통계에서 제시된 검거율. 이는 경찰에 의해 “공식접수된 사건” 중 검거된 사건의 비율일수밖에 없음.

※ 주의 : 극소사례에서 계산된 값 또는 그 값에 근거한 계산치이므로 매우 불안정할 수도 있음.

피해자신고율이 불안정하게 측정된 주거침입강도의 경우를 제외할 경우, 피해조사에서의 피해자신고율은 추정범죄처리율과 비례하는 경향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반드시 그러하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수준인데, 이는 각 범죄별로 신고접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추정된 신고접수율 역시 대체로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에는 다른 종류의 요인이 개입되기도 한다. 그 요인들 중에는 각 범죄들 사이의 고소고발 비중의 차이가 포함될 수 있다. 고소고발 비율은, 강절도의 경우 그 비중이 1.5%로 대단히 낮은 데 비해, 성폭력과 상해범죄의 경우엔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비율의 차이는 신고접수율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 신고와 고소고발은 현격히 다른 종류의 신고이기 때문이다. 단순 신고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 접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의 여지가 크지만, 고소고발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을 재량이 매우 적다고 할만하다. 따라서 고소고발의 비중이 높은 범죄는 그에 비례하여 그렇지 못한 범죄에 비해 신고접수율이 크게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⁶⁰⁾. 또한, ‘가해자 체포의 용이성’ 역시 신고접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통 경찰이 범죄신고접수를 하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은 그 첫째가 사건내용의 심각성이고, 그 다음이 범인의 체포가능성이다(탁종연, 2006). 특히 경찰에서 ‘검거실적’이 중요한 문제가 될 때 체포가능성이 적은 범죄는 공식적인 신고접수를 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성폭력범죄와 상해범죄는 적어도 강절도에 비해서는 가해자 체포 확률·체포용이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강절도 용의자 체포가 특히 어려운 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성폭력과 상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그나마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위 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의 비중이 높고 낮은 것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에 비해 가해자체포가 쉬울 수밖에 없는데⁶¹⁾, 위 표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의 비중이 높은 순서는 상해, 성폭력, 강도, 절도의 순이다. 그리고 이 순서는 본고에서 추정한 신고접수율 순위와 거의 같은 순서이기도 하며, 동시에 검거율 순위이기도 하다.

60) 게다가 성폭력과 상해는 어떤 식으로든 ‘광의의 신고’에 의해 인지되는 비율이 거의 90%-100%에 근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절도와 이들 범죄의 고소고발 비중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강절도와 이들 범죄 사이의 신고접수율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61)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도, 성폭력이나 상해범죄가 강절도범죄보다는 가해자 체포에 유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상해범죄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순간에 서로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대면할 수밖에 없는 범죄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절도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할 확률 자체가 매우 낮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도주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복면을 쓰는 강도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는 스트리트범죄(Street crime) 중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절도범죄의 범죄암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판단한다.

본고에서 행한 범죄암수추정의 적합성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추정신고접수율이 얼마나 현실 적합한지를 어느 정도라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위 표에 제시한 추정신고접수율이 일정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판단한다. 한편, 추정신고접수율의 현실적합성 판별은 ‘피해자 사건처리인지율’이란 개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 사건처리인지율’은 필자가 편의상 명명한 개념으로, 이 개념의 내용은 피해조사에서의 특정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토대로 구성⁶²⁾된 것이다. 이 비율은 그 자체로 신고접수율은 아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신고접수율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개념과 추정신고접수율이 일정 정도 비례하기만 해도 추정된 신고접수율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 표를 보면, 특별히 사례가 적어서 비율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들을 제외할 경우 ‘피해자 사건처리인지율’과 ‘추정신고접수율’이 상당한 정도로 비례하고 있다.

끝으로, 강도범죄의 ‘추정신고접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짓고자 한다. 위 표를 볼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강도범죄의 ‘추정신고접수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강도는 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높고 그에 따라 절도보다 보다 신고율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큼 ‘추정신고접수율’이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는 본고에서의 강도범죄 암수추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일까? 물론 전자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검거율’과 관련해 설명해볼 수 있다. 공식통계상에서의 ‘검거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단지 ‘범인체포율 혹은 체포능력’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물론 그런 성격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검거율에는 그것 이외의 특성도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각 범죄유형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범인체포의 난이도’는 다르다.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인체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62) 그 문항은 “(경찰이) 당신에게 신고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까?”라는 질문(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 525)이고, ‘피해자 사건 처리 인지율’은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정의한 것이다.

범죄(상대적으로 수사단서가 많은 범죄)와 범인체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상대적으로 수사단서가 적은 범죄) 사이의 검거율은 달라질 것일 수도 있다. 위 표에서 검거율이 높은 순서가 상해, 성폭력, 강도, 절도 순인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난이도에 비례하는 것이긴 하다. 그런데, 위 표에 나타난 강도범죄의 검거율은 기본적인 ‘범인 체포난이도’에 비해서도 높다. 즉 그 검거율이 성폭력보다 낮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절도보다는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강도범죄의 경우 절도보다 수사단서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의 상대적 심각성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범인을 검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도범죄의 검거율이 절도검거율보다 월등히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범죄의 ‘범인 체포난이도’가 절도의 그것보다 높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며, 강도사건으로 신고된 사건들 중 거의 대부분에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위 표에 나타난 강도범죄의 검거율은 이 범죄의 기본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이 지점에서 공식통계상의 ‘검거율’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공식통계는 범죄암수가 제외된 범죄들의 집합이다. 이에 따라서 공식통계에 제시되는 ‘검거율’ 역시 오로지 순수한 의미의 범인체포능력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공식통계에서 표현되는 ‘검거율’은 ‘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건’ 중에서 ‘범인이 체포된 사건’의 비율을 뜻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즉 범인을 많이 체포해도 검거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사건을 덜 인지·처리해도 검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기관의 범죄 인지 혹은 공식통계상 기록되는 범죄의 비중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등의 신고이고, 그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들 신고를 경찰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일에 속하나 후자는 경찰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검거율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경찰이 범인체포가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들만 주로 접수하고 나머지 사건을 공식화하지 않는다면 공식통계상의 검거율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경찰이 범죄체포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신고를 공식화한다면 공식통계상의 검거율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강도범죄의 검거율이 월등히 높은 것과 강도범죄의 추정신고접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2008년도 공식통계자료와 피해조사자료를 비교하여 종합적인 범죄암수추정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침입절도는 실제 사건의 8.6%, 침입강도는 9.7%, 대인절도는 1.3%, 대인강도는 2.4%, 성폭력은 12.5%, 심각한상해는 28.0%만이 공식통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 여러 오류의 가능성으로 인해 이 같은 추정결과가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본고에서 시도한 작업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되어왔던 어떤 범죄피해조사자료보다도 양호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고에서는 ‘범죄암수추정’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아내기도 하였다. 적어도 어떻게 해야 좀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찾아내고자 애썼다.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정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피해조사자료가 양호해야하겠지만, 피해조사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범죄암수추정 작업은 그 어느 지점에서라도 심각한 오류로 귀결될 공산이 늘 존재한다. 그러한 오류의 가능성은 특히 여러 범죄들의 속성을 사전에 잘 알고 있지 못할 때, 더 중요하게는 공식통계의 속성과 분류방식을 잘 알고 있지 못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피해조사상 특정범죄의 피해율 추정치가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그 범죄에 정확히 맞대응하여 비교할 수 있는 공식통계상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내지 못하면 그 범죄에 대한 추정범죄암수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암수를 추정할 때에는 공식통계상의 각 범죄에 대한 정의와 분류방식 및 각 범죄가 포괄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⁶³⁾. 본고에서 그에 관련

63) 하지만, 그 작업에는 기본적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범죄발생통계인 『범죄분석』의 출간물의 과도한 소략성 때문이다. 사실, 소략한 것은 책자가 아니다. 그 통계의 원자료(raw data)가 필요한

한 작업과정을 최대한 상세히 보고한 것은 추정된 범죄암수율이라는 결과물보다도 그러한 최종결과가 도출되는 과정과 그 도출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설령 결과물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이 개선되면 향후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 믿는다.

한편, 본고에서는 범죄암수추정 결과의 적합성 혹은 타당성을 어떤 식으로든 검증하는 방법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해보기도 하였다. 범죄암수추정을 해놓고 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범죄암수추정은 사실상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조사상의 신고율과 공식통계상의 여러 지표들을 이용해 범죄암수추정 결과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들은 더 많을 수도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사전지식 혹은 관련된 축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와 같은 타당성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본다. 이에 관한 개선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범죄암수는 당연히 공식통계기록량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지 범죄암수가 공식통계량보다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범죄암수추정을 통해 공식통계의 구조를 좀 더 잘 파악하고, 때때로 공식통계가 은폐하고 있는 속성들을 이해하여 최종적으로는 범죄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⁶⁴⁾.

추정된 범죄암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해석상 유의해야 할 만한 점들이 많다. 특히 어떤 특정 범죄유형의 전체 범주 내의 범죄암수율을 가지고 그 유형 내부의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적어도 범죄학연구자들에게라도 그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 앞으로 좀 더 획기적인 범죄암수추정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게 될 것이다.

- 64)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통계상의 ‘강간’범죄통계만으로는 그 ‘강간’이라는 범주 내의 그 실질적인 구성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고, 그 때문에 범죄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이해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만한다. 대규모 표본의 범죄피해조사를 이용하면, 그 실제 구성을 범죄암수추정을 통해 파악해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만약 한정된 자원 속에서 강간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불 강간피해의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와 같은 공식통계를 이용하면 필요한 재원을 과대 혹은 과소 산출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해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심각한 유형의 강간범죄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의 성폭력범죄 사이의 비율을 계산해 내고, 그 각각의 범죄암수를 추정할 경우 특정한 범죄유형 피해지원에 소요될 수 있는 재원의 한도를 좀 더 정교하게 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위유형에까지 기계적으로 그 수치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각 범죄유형별로 범죄암수율이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유형내에서도 사건 내용이 심각할수록 암수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⁶⁵⁾. 그리고 개별범죄의 독특한 속성들로 인해 좀 더 세분화된 판단을 해야 범죄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분화에 따라 범죄암수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범죄암수추정 역시 종종 세분화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조사 표본의 규모와 공식통계의 세분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갈 길은 생각보다 멀다.

65) 가령, 대인절도의 범죄암수율을 가지고 비례식을 이용하여 주거침입절도의 범죄암수를 기계적으로 산출할 경우엔, 우리나라는 사실상 주거침입전문절도범의 천국이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각한폭행의 범죄암수율을 가지고 비교적 사소한 폭력의 암수를 함부로 유추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비교적 사소한 폭력의 암수는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기광도, 2002,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개괄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5-19., 한국피해자학회.
- 김승권 · 김은경 · 김유경 · 조애저 · 김성희 · 이진우 · 전영실 · 강은영 · 곽배희 · 박소현 · 채규만 · 현혜순 · 신연희 · 정춘숙, 2008,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 박정선 · 정병하 · 탁종연 · 황정인, 2009, 『백죄백서 및 범죄분석 효용성 제고를 위한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 김준호 · 심영희 · 조정희, 1991,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이동원, 1991,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09a, 『2008범죄분석』 통권 제141호.
- 대검찰청, 2009b, 『검찰연감』, 검찰.
- 박순진, 1994, “범죄피해조사의 몇 가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24호: 58-6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 2002, “범죄피해조사의 표집에 대한 재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21-38. 한국피해자학회.
- 박순진, 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107-127., 한국피해자학회.
- 박순진 · 최영신, 199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 2002, “범죄피해조사 개선방안 — 자료수집방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65-80. 한국피해자학회.
- 심영희, 1990,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149-194.,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심영희 · 김준호 · 최인섭 · 조정희 · 박정선, 1992,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 윤성은 · 박선미 · 조정희 · 김선영 · 강영수,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 조정희, 1990,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호 : 277-3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성식, 1998, “범죄피해에 있어 개인수준 요인들의 지역조건적 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 85-109.,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순래, 2002, “범죄피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사표의 문항구성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 39-63. 한국피해자학회.

장준오, 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 김성언, 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 박순진, 1995,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 기광도, 1998,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 황지태, 2004, “범죄피해율 감소 원인에 대한 검토 : 2002년도 범죄피해조사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 5-23., 한국피해자학회.

탁종연, 2006,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겨울호 : 59-80., 한국경찰연구학회.

황지태, 2009a,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 봄호): 280-3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2009b,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Adler, F., Mueller, G. & W. Laufer, 1991, *Criminology*. New York : McGraw-Hill, INC.
- Cohen, L. E. &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 :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7.
- Garafalo, J., 1990, "The National Crime Survey, 1973-1986 : Strength and limitations of a Very Large Data Set", pp. 75-96 in *Measuring Crime*, edited by D. MacKenzie, P. Baunach & R. Roberg.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arafalo, J. & M. J. Hindelang, 1997,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Crime Surve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 Grabosky, P. N., 1989, *Victims of Violenc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Hagan, J., 1988, *Modern Criminology*, New York : McGraw-Hill, INC.
- Karmen, A., 1996,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O'Brien, R. M., 1985, *Crime and Victimization Data*, Beverly Hills, CA : Sage.
- Sanderson, J., 1994, *Criminology Textbook*, 6th edition. U.K. HLT Publications.
- 김형만 · 이동원 역, 2001, 『범죄학개론』, 제6판 한국어판. 청목출판사.
- Savitz, L. D., 1982, "Official Statistics", pp. 3-15 in *Contemporary Criminology*, edited by Savitz, L. & N. Johnson, 1982, Johnson Wiley & Sons Ins. New York.
- Skogan, W. G., 1981,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Victimization*,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parks, R. F., 1981, "Surveys of Victimization : An Optimistic Assessment", in Michael Tonry & N. Morris [eds.] 1981, *Crime and Justice :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arks, R. F., Hazel, G. G. & D. Dodd, 1977, *Surveying Victims : A Study of the Measurement of Criminal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and Attitude to Criminal Justice*, John Wiley & Sons Inc.

- Sutherland, H. E., Cressey, D. R. & D. F. Luckenbill, 1992, Principles of Criminology, 11th edition. General Hall Inc. New York.
- Van Dijk, J. & C. Steinmetz, 1980, "The burden of crime in Dutch Society, 1973-1979", in Richard L. B., [eds.] Coping with Burglary : Research Perspectives on Policy, Kluwer-Nijhoff.

Estimating the Amounts of Some Major Hidden Crime 2008 in Korea

Hwang, Ji-Tae*

Although one of the primary purpose of Criminal Victimization Survey is estimating the amounts of "Hidden Crimes" which are not detected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such trials as estimating hidden crimes have rarely been done in Korea probably because these are very difficult task more than we think and many problems exposed at crime victimization survey in Korea from 1994 to 2006 have been disturbed the accuracy of estimation. This paper aims to try estimation of hidden crime in 2008 regarding that 2009 victim survey in Korea was(might be) improved very much compared to earlier victim surveys, especially in sample size from 2,000 to 10,000. For the sake of this aim, this paper tried to estimate the amounts of hidden crime(burglary, robbery, theft, severe injury, sexual assault) 2008 in Korea and furthermore tried to develop the device of verification of the results of estimation.

In this paper, it is estimated that burglary-theft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is only 8.6% of really committed crime, and burglary-robbery 9.7%, personal theft 1.3%, personal robbery 2.4%, sexual assault 12.5%, severe injury 28.0% of really committed crime. From not a few probable possibility of errors, it is still difficult to affirm such results. However, it can be said this results have significance in that those are estimated from the relatively more better victimization survey data in Korea ever since the first victim survey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in 1994. At the same time, this paper contained concerning what should be the right method of estimating hidden crimes. Especially, it emphasized we should not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Sociology

neglect to catch the exact range of the definition of crime and the accurate method of classification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This paper generally confirmed that each different pattern of crimes has different rates of hidden crimes respectively. In case of more serious crime, the relative amounts of hidden crime was small, but in case of relatively less serious crime, the relative amounts of hidden crime was large. It was by and large the same tendency within same category of specific crimes. And it was the basic logic of verification of estimating hidden crimes with some special method of this paper using the details of official statistics of crime. So it would be more accurate estimation of hidden crimes to estimate subdivided crimes as much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all together. To be possible to do such relatively accurate estimations, it should be set a condition of large sample size of victimization survey and possibility of detail subdivision of official crime statistics.

❖ Key words : hidden crime, estimation of hidden crime, official crime statistics, victim survey

